

電子債權登錄制度和 國內 입법*

박 환 일**

목 차

- | | |
|-----------------------|----------------------|
| I. 머리말 | |
| II. 國際債權讓渡協約上的 채권양도 | 3. 電子外上賣出債權의 담보 제공 |
| 1. 국제채권양도의 효력 | 4. 電子어음의 할인 |
| 2. 優先權에 관한 규칙 | IV. 日本에서의 채권양도와 電子登記 |
| III. 國內에서의 채권양도와 電子登錄 | 1. 개관 |
| 1. 개관 | 2. 動産·債權讓渡特例法和 전자등기 |
| 2. 資産流動化와 매출채권의 양도 | V. 맺음말 |

I. 머리말

어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賣出債權을 속히 현금화할 필요가 생겼다고 하자. 그 처리방법을 둘러싸고 IMF 외환위기 前과 後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종전에는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거래은행이나 私債市場에서 할인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은행은 이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還買하는 조건으로 어음금에서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높게 마련이고 어음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割引을 거절하는 일도 있었다.

IMF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들이 연쇄부도의 여파로 받은 어음을 현금화하지도 못하고 도산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와 금융계는 어음의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기로 방침을 장하였다. 그리하여 거래은행이 신용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많은 담보를 잡고 있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도록 했다.

* 본고는 2005년 10월 27일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국제거래법학회-UNCITRAL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국제법무대학원 인터넷법무학과 주임교수, 법학박사.

오늘날에는 기업이 물품의 매매·대여, 용역의 제공 등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금청구권(account receivables: 이하 “매출채권”이라 함)을 취득하였을 때 그 변제기 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즉, ①제3자에게 양도(outright assignment)하고 대가를 지급받거나 기존 채무를 면제받는 것, ②할인(discount) 받는 것, ③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assignment by way of security)하고 대출을 받는 것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지명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 받는 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만일 세 번째 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다면 기업들이 특히 物的 擔保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이들 세 가지 방법이 모두 電子方式으로 이용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①은 資產流動化(asset-backed securitization: ABS) 거래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에 의하면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유동화 대상인 매출채권을 集合(pooling)하여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에 양도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에 유동화대상자산의 명세를 전자기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이 금융감독원의 電子公示 시스템¹⁾을 통하여 공시되고 있다. ②는 2005년 9월부터 전자어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004.3.22 공포, 2005.1.1 발효, 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함)에 의하여 전자어음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③은 2000년 2월 정부의 「어음제도의 개선방향」²⁾에 따라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형태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채권양도의 방법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01년 「국제거래에서의 채권양도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일명 “UN Receivables Convention”, 이하 “UNCITRAL협약” 또는 “협약”이라 함)을 5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제정하였다.³⁾ 국제거래상의 채권을 양도할 때 이것이 이중으로

1) DART 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이라고도 한다.

(<http://dart.fss.or.kr>)

2) 재정경제부는 어음의 분실, 위·변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신용경색기(credit crunch)에 받을어음의 연쇄부도로 후자도산이 속출하자 어음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IMF 사태 직후 25~30%의 초고금리와 신용경색이 이어지면서 후자도산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일부 신용이 떨어진 기업의 부도가 발생하면서 어음거래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자금난에 처한 기업의 부도를 유발하였다. IMF 사태 직후 4개월간 부도가 난 상장기업 48개사 중 41개사가 97년 상반기 후자기업이었다(삼성경제연구소, 「IMF 사태 이후 업종별 동향 (1)」, 1998.3.17). 이에 따라 정부는 취급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양도되거나 양도인의 압류채권자·파산관재인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UNCITRAL 협약에서는 이들 서로 경합하는 권리주장자(competing claimants) 중에서 優劣(priority)⁴⁾을 가리는 규정을 두었다(협약 제22~24조). 다만, 협약은 우선순위에 관하여 통일적인 실체법(substantive law) 규칙을 두지 않고 저촉법(conflict of laws) 규칙(제22조)만을 두었을 뿐이며, 실체법 규칙에 관하여는 부속서(Annex)에서 각 체약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代案(alternatives)을 제시⁵⁾하였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고 債權者와의 特約으로 우선권 주장을 배제할 수 있지만, 제3자들 사이에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⁶⁾ 그러므로 협약에서는 경합하는 권리자들 사이에 누가 우선하는지 채권양도인의 소재지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협약 부속서에서는 (i)국제 또는 국내 등록, (ii)양도계약의 체결시기, (iii)통지의 도달시기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 (iv)복수 양수인 간의 우선권에 관하여는 양도 통지의 도달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v)양수인과 파산관재인 또는 압류채권 간에는 양도계약의 체결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우선순위에 관한 5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UNCITRAL협약은 매출채권이 國際性(internationality)을 띠는 경우(원계약 체결 시점에 양도인과 채무자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 제3조 1문)의 채권양도(assignments of international receivables) 및 채권거래가 국제성을 띠는 경우(양도계약 체결 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 제3조 2문)의 양도(international assignments of receivables)에 적용되며,⁷⁾ 양도인은 양도

3) 2001년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2006년 5월 현재 미국 등 3개국이 서명하였고 리베리아 1개국만이 비준하는 데 그쳐 아직 5개국 이상의 발효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payments/2001Convention_receivables_status.html>

4) 우선권의 문제는 우리 민법상으로는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의 문제이다. 그러나 협약에서는 우선권이 인적·물적 권리인지 여부, 채무를 위한 담보권인지 여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하므로 순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문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석광현,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법무부, 2002, 20~21면.

5) 5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고 자국의 우선권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규칙은 완전한 모델법이 아니므로 어느 국가든 추가적인 규정을 두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 2005, 215면.

7) 채권양도협약은 채권양도가 개인·가족·가계의 목적을 위하거나(예: 소비자청구권, 임금·보험금청구권의 양도), 기업소유지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다른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배제된다(제4조 1항). 주식·외환·상품거래소에서의 거래, 네팅 계약으로 규율되는 파생금융상품거래·외환거래, 은행간 지급·결제, 금융기관에 의한 유가증권의 담보·매매·대여·환매거래, 은행예금, 신용장 또는 독립보증서에서 발생하는 금융채권의 양도는 그 결제방법이 다르므로 협약의 적용이 없다(제4조 2항). 협약은 어음·수표법이나 개인·가족·가계 목적의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예: 소비자보호법)상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제4조 3.4항), 부동산거래에 따른 채권양도 역시 현지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

계약의 체결 시점에 締約國에 소재하여야 한다.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현금화하는 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므로, UNCITRAL협약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경우에 협약에 규정된 우선순위의 규칙 중에서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여야 국제성을 띤 채권양도를 통하여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리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매출채권의 등록으로 범위를 좁히고 현재 국내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식·사채 등 有價證券의 전자등록(electronic registration)에 대해서는 論外로 한다.⁹⁾ 이를 위하여 앞에서 소개한 3가지 국내 채권양도거래의 실태를 알아보고 제도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없는지, 또 우리 나라의 경험을 UNCITRAL협약의 시행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겠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國際債權讓渡協約上的 채권양도

1. 국제채권양도의 효력

UNCITRAL협약에 의하면 채권양도¹⁰⁾ 계약은 그것이 복수 채권의 양도, 장래채권의 양도 또는 채권의 일부나 채권에 대한 불가분의 이익의 양도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또는 채무자나 경합하는 권리주장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협약 제8조 1항).¹¹⁾ 그리고 최초의 양도인 또는 후속 양도인과 채무자나 후속 양

으므로 현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제4조 5항).

- 8) 여기서 '소재한다'(located)의 의미는 자연인의 경우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에도 설립지가 아니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place of central administration / chief executive office)로 본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설립지의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절세 등을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영업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역에 본사를 설립한 후 지점을 통해 영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 9) 한국상사법학회는 2003년 6월의 하계학술대회에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상사법연구』 제22권 3호 / 특집호(통권 제39호) 참조.
- 10) 매출채권의 양도는 서면(writing)으로 하여야 하며, 소정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로 해도 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서명자가 동의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하여 그 서면이 어느 사람을 특정하고, 그가 서면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표시하기만 하면 된다(제5조 c). 채권양도 거래에 있어서는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변제를 받아야 하므로 채권양수의 사실을 통지(notification)함과 아울러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payment instruction)하여야 한다(제13조 1항).
- 11) 채권양도의 대상은 금전채권을 원칙으로 하며(제2조 a),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장래의 채권(future receivables)도 일정한 조건하에 양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즉, 그것이 조건부이든 순전히 가정적(purely hypothetical)이든 양도인과 채무자간에 원계약

수인간의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양도는 유효하다(협약 제7조 1항). 설령 양도인의 협력 또는 授權이 없더라도¹²⁾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협약 제13조 1항).

우리 民法에서는 제450조 1항에서 지명채권양도의 對抗要件을 규정하면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할 수는 있으나 債權者代位權에 기하여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자산유동화법은 民法에 대한 특례를 두어(동법 제7조 1항)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 포함)에 관하여는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SPV)에게도 통지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협약 제17조는 채무자의 변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의 통지 전, 통지 후, 지급 지시, 수회의 통지, 일부양도의 통지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지급에 의한 免責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 民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¹³⁾

2. 優先權에 관한 규칙

다수의 경합하는 권리주장자들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優先權이 있는 채권자를 판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위험을 경합하는 권리주장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신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¹⁴⁾

협약 제22조에 의하면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경합하는 권리주장자들간의 우선순위는 양도인 소재지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다. 우선 ‘對抗要件主義’는 양도의 당사자간에는 양도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별도의 효력발생요건(대항사유)을 요구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반면 ‘善意保護主義’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만으로 그들 사이는 물론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도 양도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양도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하는 입법주의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

(original contract)의 체결 시점에서 양도가능한 채권으로 특정할 수만 있으면(identifiable) 된다(제8조 1항).

12) 특히 양도인이 도산한 경우에 유효하며, 양수인과 양도인의 채권자들, 파산관재인 중에 누가 우선하는지는 우선권을 결정하는 준거법을 따르면 된다. 채무자가 미지의 양수인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지급을 요구받을 위험성이 있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협약 제17조 7항). 석광현, 전계서, 12면.

13) 상계서, 14면.

14) 상계서, 21면.

고 있어 前者에 속한다.

UNCITRAL 작업반(Working Group)에서는 채권양도 시의 우선권(priority)에 관하여 당초 통일적인 원칙을 정하려고 하였으나 시기상조라는 유럽 쪽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타협안으로 부속서에 5가지의 규칙을 정하고 각국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반드시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하였다.

협약 부속서에 열거된 5가지의 대안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對抗要件主義를 취하고 있다.¹⁵⁾ 등록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정하기로 하는 원칙은 미국, 캐나다 등 이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행협회는 등록제도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

우리 民法의 대항요건은 부속서에 규정된 우선권에 관한 규칙 중에서 양도통지의 도달 시를 기준으로 하는 제4절과 가장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¹⁶⁾ 다만,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確定日字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450조 2항).

그러나 협약 부속서 제2절의 제3조를 보면 채권양도에 관한 데이터의 등록을 위하여 등록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등록제도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parameters)를 정하여야 하는데 登錄機關(registrar)의 공적 성격, 등록을 요하는 데이터의 유형, 현대의 금융관행이 등록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고 등록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¹⁷⁾ 제4조 1항에서 등록할 사항이란 양도인과 양수인을 특정(identification)할 수 있고,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brief description)하는 내용이면 족하다. 예컨대 “본인의 자동차운송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 또는 “A, B 및 C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본인의 채권”과 같이 기술하면 된다. 장래채권의 경우 양도 시에 채무자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본다.¹⁸⁾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산유동화 거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의 채권양도에 의한 자금조달이 등록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¹⁹⁾ 이는

15) 협약은 채권양도의 당사자간의 문제와 채무자에 대한 관계와 기타 경합하는 권리주장자간의 관계, 즉 우선권을 구별하고 있는 바, 부속서에서는 우선권만을 규율한다. 그러나 양도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결정하는 부속서 제3절은 양도계약의 당사자간은 물론이고 경합하는 권리주장자들간에도 양도계약의 체결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선의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상계서, 23면.

16) 상계서 24~25면.

17) 협약 부속서 제4조의 공식 주석.

18) 석광현, 전계서, 197면.

19)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에 의하면 전자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공인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채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되어 시점확인 이 있으면 민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된다.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국제 또는 국내 등록(registration)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Ⅲ. 國內에서의 채권양도와 電子登錄

1. 개 관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債權讓渡에 의한 자금조달이 성행하고 있다. 그것은 기업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매출채권의 가액이 거액화하는 데다 매출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자산유동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의 전자상거래(B2B)가 활성화되면서 기업 상호간 및 기업과 은행간에도 전자결제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거래은행에서 매출채권이 표창된 어음을 할인 받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지금은 전자방식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ies: IT)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과, IMF 사태 이후 금융기관들의 여신심사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不動產 이외의 담보가치가 있는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할 때 이것의 법적 성격은 어디까지나 지명채권의 양도이므로 우리 민법상 對抗要件을 취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하에서는 1998년에 제정된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SPV)에 일단의 채권을 양도하는 것, 전자방식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지시채권인 전자어음상의 채권을 할인 받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각각의 대항요건 내지 효력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 資産流動화와 매출채권의 양도

자산유동화법에 의하면 유동화 대상자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매출채권도 적정 규모로 모아서(pooling)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법적 성격은 賣買(true sale)이다(동법 제13조 참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유동화하려면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登錄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1항 1문). 등록된 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1항 2문). 금융감독원의 『자산유동화업무규정』에 의하면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 중에서 유동화 자산 및 자산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 명세: 법 제8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소유권·저당권 이 전등기가 생략될 수 있는 자산과 기타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자산 고유의 특성 또는 내용 등에 따라 다른 자산과 개별적으로 식별 및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주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내용이나 전문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결과 등을 기재하며,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일반적인 평가도 포함한다.

-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등
-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 자금의 차입 및 운용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나 신탁 또는 그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저당권의 설정을 금융감독위원회에登錄하도록 한 것은 채권양도에 따른 민법상의 對抗要件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²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양도에 관한公示(disclosure)의 목적을 위한 것도 있다. 자산양도 등의 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등록²¹⁾ 등 민법 기타 다른 법령상의 공시방법(저작권, 지재권 또는 그에 대한 질권의 등록)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²²⁾

금융감독위원회에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등록을 할 때에는(자산유동화법 제6조 1항)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양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자산유동화법 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 양도 등의 개요
- 양도 등 대상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 양도 등의 방법: 양도 등의 방법, 일정 및 세부내용, 대금지급방법 등
- 양도 등 계약상의 특수한 내요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 여부
- 양도 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예: 자산유동화법 제7조 또는 제8조)이 적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법률상 특별효력의 내용
- 증빙서류 등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 자산유동화 실무연구회, 『금융혁명 ABS: 자산유동화의 구조와 실무』, 한국경제신문사, 1999, 320면.

21)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登記와登錄은 그 취급기관이 법원 등기소나, 행정청이나 하는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부동산은 등기를 하고, 자동차·중기·선박 등에 담보권을 설정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22) 상계서, 320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電磁記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자산유동화법 제6조 1항). 이는 등록관련 서류를 표준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公示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 거래의 내역은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電子公示(DART) 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다.²³⁾

자산유동화 거래의 경우에는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는 양수인(SPV)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자산유동화법 제7조 1항). 한편 제3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채권양도의 등록을 하는 것으로 對抗要件을 갖춘 것이 된다(자산유동화법 제7조 2항). 이는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수천, 수만개의 指名債權에 일일이 대항요건을 갖추 수 없기 때문에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자산유동화를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대폭 완화한 것이다.

유의할 것은 유동화대상인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二元的 구조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채무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으로 하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생략하고 등록으로 갈음하게 되면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상계권 기타 항변권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도사실에 대한 채무자의 선의·악의는 불문한다.

3. 電子外上賣出債權의 담보 제공

전자외상매출채권²⁴⁾이란 은행과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B2B 거래²⁵⁾ 또는 오프라인 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 한 후 물품판매자를 채권자로 지정하고

23)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사이트(<http://dart.fss.or.kr>)에서 회사명으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검색해 들어가면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예컨대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내역을 보면 일련번호와 고유번호, 관할거점, 채무자의 성명·상호, 최초발생일, 이자율, 만기일, 잔액, 원금평가액, 양도예정액, 비고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24)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제2조 1호에서는 “‘전자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상거래를 통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채화 및 용역(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을, 구매기업이 본 약관에서 정한 변경권에 기하여 전자채권발행대행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채권의 결제, 행사방법, 결제시기 등을 변경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변경되는 채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5) 기업간에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그 시장(electronic marketplace)을 뜻하는 MP는 시장을 운영하는 업체를 일컫기도 한다.

일정 금액을 변제기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²⁶⁾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국내의 모든 은행이 국가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1년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2년 3월 4일 기업·외환·조흥·한빛·신한·하나은행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²⁷⁾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는 인터넷뱅킹 및 B2B 거래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금융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종래 기업들이 대금 결제에 사용해온 어음을 대체하는 효과가 컸다.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購買企業(통상 대기업)이 거래은행과 협력업체 상호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발행한도를 정한 후 거래은행에 전자외상매출채권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販賣企業(통상 중소기업)도 그의 거래은행과 전자외상매출채권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이 전용계좌는 다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납품 받기로 한 내역을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은행에 등록하고 전자채권의 발행을 신청한다.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은 발행대행은행으로서 중앙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채권등록원장상의 등록을 의뢰하고, 중앙관리기관은 채권보관은행인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에 전자채권의 발행 내역을 전자적으로 교부한다. 중앙관리기관으로부터 발행 내역을 교부받은 채권보관은행은 이를 판매기업에 통지하고, 판매기업은 약정한 대로 물품·용역을 구매기업에 인도한다. 그 후 변제기가 도래하면 발행대행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전자채권교환절차를 거쳐 채권보관은행의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다.

판매기업은 전자채권을 擔保로 하여 변제기 전에 미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즉 판매기업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구매기업이 등록한 납품 내역을 조회한 후 전자외상매출채권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변제기까지의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판매기업이 채권보관은행에 외상매출채권을 양도²⁸⁾하면, 채권보관은행은 납품내역과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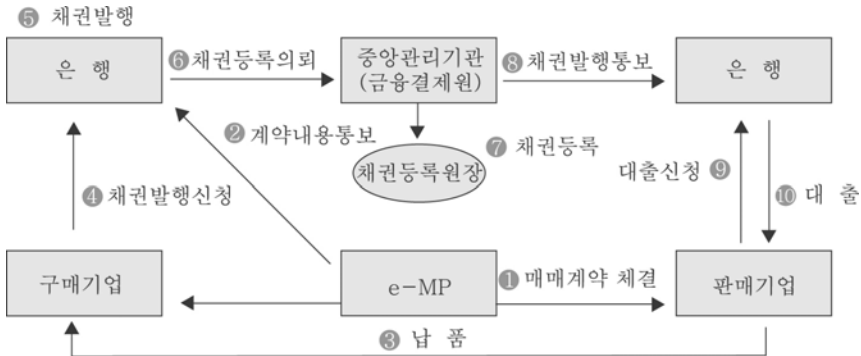
26) 기업의 물품·서비스 구매대금의 결제는 다음 방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①現金決濟: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하여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송금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購買專用카드: 구매기업이 물품구매를 위하여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구매기업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지정결제일에 결제하고 판매기업은 카드발급은행에 매출전표를 매입 의뢰하여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판매기업은 해당 은행과 가맹점 약정, 구매기업은 카드회원 약정을 각각 체결하여야 한다. ③企業購買資金貸出: 판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면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사전에 약정한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환어음을 결제한다.

27) 김형민, “전자의상매출채권의 이해”,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6호, 금융결제원, 2002, 55면.

28)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債權의 讓渡擔保라 하겠으나, 양도담보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채권자가 바뀌는 것이지만 전자의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당사자간이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모두 擔保로서 효력만 가진다는 점에서 質權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정경영, “전자의상매출채권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2002 e-비즈니스 법제연구 I』, 한국전산원, 2002.12; 그러나 채권양도가 전자등록이라는 公示方法을 갖추었기 때문에 消費貸借로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는 질권이 아니라 抵當權의 속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금액, 대출신청금액을 확인하고 판매기업의 위임을 받아 매출채권을 양수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통상 내용증명우편)로 구매기업에 통지한다.²⁹⁾ 채권보관은행은 대출신청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판매기업에 대출을 집행하고 변제기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발행대행기관을 거쳐 대금을 지급 받으면 대출금에 충당한다.

〈그림 1〉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 메커니즘



자료: 한국산업은행<www.kdb.co.kr>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업무처리흐름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적 성격은 전자채권상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指名債權이다. 오프라인 상의 매출채권을 채무자인 구매기업이 전자채권으로 변경한 것으로 電子證券이라는 외형과 金錢債權이라는 실체가 결합된 記名債權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³⁰⁾ 채무자의 전자채권 발행만으로는 완전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중앙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채권의 종류는 그것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표 1>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29) 종래 금융결제원은 公務所가 아니어서 확정일자를 발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민법부칙 제3조 4항) 전자채권보관은행이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에 의하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의 부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보관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외에는 사실상 유통이 불가능한 등 채권의 성질을 감안할 때 확정일자 없이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견해가 있다. 정경영, 전계 논문; 일본의 경우 2000년 4월 『상업등기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일본 민법시행법 제5조가 개정되어 전자문서에 의한 확정일자의 기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30) 정경영, 전계 논문.

〈표 1〉 전자채권의 종류

구분		종류
B2B거래 (전자상거래)	일반 거래	무보증 전자채권, 은행보증 전자채권
	매매보호 거래	은행보증 전자채권
오프라인 거래 (일반상거래)		무보증 전자채권, 은행보증 전자채권

- 주: 1. 일반거래: B2B시장 등을 통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은행이 단순 결제대행 서비스만을 제공해주는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2. 매매보호거래: B2B시장 등을 통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와 구매대금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품인도 전에 발행은행이 은행보증 전자채권의 지급위탁 사실을 확인해주는 결제대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3. 오프라인 거래: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B2B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앙관리기관의 電子債權³¹⁾과 관련된 업무는 ①채권발행 등록, ②채권발행 취소, ③위탁채권 변경, ④등록채권 취소, ⑤위탁권리 이전, ⑥사고신고 접수, ⑦채권소멸 등록, ⑧채권보관은행 변경, ⑨채권대금 입금, ⑩미결제채권 통지, ⑪채권약정 등록, ⑫채권 조회, ⑬채권발행한도 조회, ⑭미결제채권 조회 등으로 나누어 구분된다.³²⁾

전자채권은 讓渡性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현재의 용도는 B2B거래 및 오프라인 상거래용 온라인 결제수단에 그쳐 있다. 만기는 발행일 포함 180일 이내로 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 결제일은 구매기업이 전자채권금액을 결제하는 날로 전자채권상의 만기일이며,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未決濟 전자채권을 발행한 구매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정지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자채권의 擔保貸出도 채권보관은행에서만 가능하고, 전자채권을 流動化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의 수요에 부응한다고 전자채권이 채권양도 방식이 아니라 배서·교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다음에 설명하는 電子어음이 될 것이다. 외상매출채권의 채무자인 구매기업이 이를 전자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

31) 한국전자지불포럼에 의하여 표준화된 전자채권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종류(은행보증, 무보증): 1자리 숫자, ②전자채권번호: 20자리 숫자=채권발행은행 코드(2자리)+채권발행일(yyyymmdd)+은행보증 여부(1자리)+일련번호(8자리)+체크디지트(1자리), ③금액: 14자리 숫자 ④구매기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명 등 ⑤전자채권 발행은행: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공동코드(2자리) 사용, ⑥발행일: yyyymmdd 8자리, ⑦만기일: yyyymmdd 8자리, ⑧전자채권 보관은행: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공동코드(2자리) 사용, ⑨판매기업: 사업자번호, 사업자명, 계좌번호 등, ⑩위탁 여부: 1자리 숫자, ⑪구매기업의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기반

32) 한국전자지불포럼·B2B지불분과위원회, 『전자의상매출채권 구성요소』, 2002.1.

금지급을 약속어음으로 하는 경우의 작성·교부에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행위의 無因性과는 달리 전자채권의 발행은 매매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해제·취소되거나 반대채권의 불이행 등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확정해두어야 할 것이다.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은 제6조 3항에서 “전자채권은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구매대금 결제용으로만 발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매계약의 유효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구매계약상의 대금채무의 반대급부(재화인도·용역제공의무)의 先이행 여부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電子어음의 할인

2005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은 전자어음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제정 및 전산개발을 마치고 2005년 9월 27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발행·유통되는 약속어음으로서 전자어음관리기관³³⁾에 등록된 어음을 말한다. 전자어음을 실시하는 목적은 약속어음의 발행·유통 과정을 전자화하여 기업의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실물어음의 발행 및 관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기업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종래 기업간의 상거래에는 어음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위·변조, 연쇄부도 등의 문제점이 속출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전자화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전자어음은 이미지를 취하는 證券방식³⁴⁾이 아니라 登錄방식이다. 지급지가 은행점포이고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배서는 총 20회까지 가능하다. 발행·배서 등의 어음행위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사용한다. 백지식 어음의 발행이나 배서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전자어음의 이용방법³⁵⁾을 보면 우선 발행은 거래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어음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전자어음의 발행에 필요한 항목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전자어음을 발행한다.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면 발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3) 금융결제원은 2005년 1월 1일자로 법무부로부터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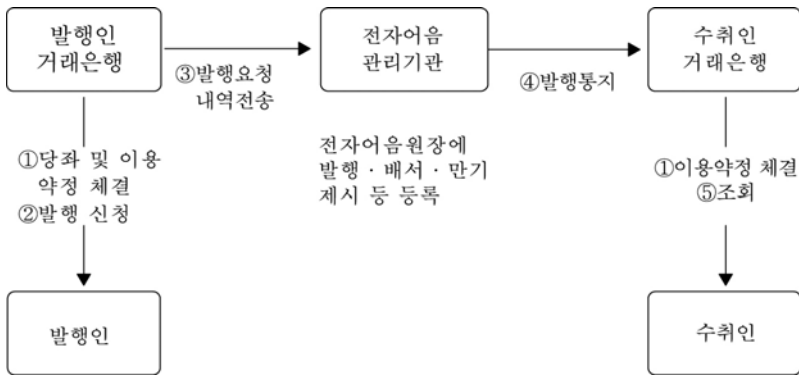
34)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표를 이미지 형태로 보관하는 트렁케이션(check truncation) 방식이 이용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이러한 방식의 자기앞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金融法務研究會에서 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였으나 費用 문제에 부딪혀 최종 단계에서 중단하고 말았다. 池田眞郎 外, “『電子債權法』の立法化に向ける理論的課題”, *ジュリスト 座談會*, (No.1276) 2004.10.1, 13면.

35) 금융결제원 보도자료, 2005.9.26. <<http://www.kftc.or.kr>>

전자어음의 수취는 전자어음이 발행되기 전에 거래은행에 전자어음 수취인으로 등록해둔 다음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행된 전자어음의 내역을 조회함으로써 한다. 전자어음의 배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 또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배서할 어음을 선택한 후 필요한 항목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끝난다. 이 경우에도 배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자어음의 피배서인은 전자어음이 배서되기 전에 거래은행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배서인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전자어음의 내역을 조회하는 것으로 어음상의 권리자가 된다.

전자어음의 지급제시 및 결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발행인이 만기일에 거래은행 당좌계좌로 어음금을 입금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소지인의 거래은행으로 입금사실을 전송하고, 소지인 거래은행은 소지인의 계좌에 어음금을 입금한다. 이 때 소지인은 지급제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림 2〉 전자어음 발행의 메커니즘



자료: 금융결제원 2005.9.26자 보도자료를 재구성함.

〈그림 2〉에서 보듯이 전자어음은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거래구조를 많이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어음의 법적 성격은背书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指示證券이고 법률상의 有價證券이다. 종이어음과 마찬가지로 증권상의 권리가 증권의 기재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文言證券이자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와 관련이 없는 無因證券으로서 유통성(negotiability)이 보장된다.

그러나 전자어음법은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외상매출채권이 전자적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요즘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행이 될지는 주목거리이다. 전자어음법

찬성논자들³⁶⁾은 B2C거래에서는 소액 현금결제를 위한 전자결제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으나, B2B거래 및 일반 거래상의 대금지급은 매우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교환결제되는 실물 약속어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디지털 경제에 합당한 電子決済방법이 요청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전자어음을 도입할 경우 거래내용이 투명하게 되고 어음의 남발로 인한 고의부도의 폐해, 어음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채시장의 어음할인을 양성화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B2B거래의 결제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³⁷⁾

반면 반대론자들은 전자어음의 도입이 정부의 어음억제정책에 맞지 않고, 전자어음이 선진국의 사례도 없는 터에 국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전자어음을 관리하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을 둘러싼 신용질서의 붕괴위험성 및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의 도입을 반대하였다. 특히 전자어음을 종이어음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같이 거래정보의 노출을 싫어하는 자는 전자어음의 사용을 기피하게 마련이고 사채시장에서의 활용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전자어음은 어음의 발행에서부터 소멸까지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음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인 無因性·人的抗辯의 切斷의 법리가 종이어음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전자어음은 발행, 배서, 지급제시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자어음으로 유통시킬 것을 예정하지 않는다면 현금결제 조건이면 인터넷뱅킹의 전자자금이체, 외상결제 조건이면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한다.³⁸⁾ 전자어음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어음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전산시스템 및 인력의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³⁹⁾

따라서 본고의 검토 대상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거래에 따른 매출채권을 전자어음에 체화시켜 거래한다고 하였을 때에도 위와 같은 논의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인 판매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채권을 조속히 현금화하는 것을 원할 것이고 구매기업으로서는 電子債權을 발행하여도 되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전자어음을 발행할지는 의문이다. 또 채권자가 어떤 이유에서 전자어음 할인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36) 전자어음법은 2001년 11월 말 議員立法으로 제안되었는데 이철송 교수의 2001년 연구보고서 『전자어음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에 포함되었던 전자어음법시안을 기초로 하였다. 전자어음법안은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일시 중단되었다가 2003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및 학계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2004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37) 정찬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금융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04, 108~109면.

38) 상계 논문, 106, 110~111면.

39) 법무부로부터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금융결제원은 본래 회원은행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구이지만, 전자어음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개인 및 법인, 금융기관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조직과 사무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상대방이 거래은행이라면 전자채권이 절차나 비용 면에서 유리하므로⁴⁰⁾ 전자채권을 권할 것이고, 일반 기업이나 사채업자의 입장에서도 거래정보가 고스란히 제3자에게 노출되는 전자어음의 배서를 기피하려 들 것이다.

IV. 日本에서의 채권양도와 電子登記

1. 개 관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장관의 자문기관인 産業構造審議會 産業金融部會 산하에 「금융시스템화에 관한 검토 소위원회」를 두고 산업금융기능의 강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원활화를 위한 매출채권의 활용하는 금융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줄곧 연구해 왔다. 그 결과가 2004년 6월 中間報告書⁴¹⁾로 나왔는데 매출채권 및 어음의 전자적 취급에 관하여 「電子債權法」(가칭)의 입법을 제안하는 등 이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일본에서의 매출채권 활용이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채권양도 공시제도의 확충을 제안하는 한편 종이어음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⁴²⁾

日本에서는 이미 1992년에 신용카드채권·리스채권 등 「특정채권등에 관련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채권법”이라 함)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資産流動化를 추진하였다. 1998년부터는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등에 관한 법률」⁴³⁾

40) 만기도래 전의 어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고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하는 어음割引의 법적 성격을 법원에서는 賣買로 보고 있다(대판 1984.11.15, 84다카1227; 1985.2.13, 84다카1832). 그러나 어음할인은 실질적으로는 金錢消費貸借에 가깝고 은행의 경우 기업에 대한 상업금융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1) 産業構造審議會 産業金融部會 中間報告書 「金融サービスの高度化とリスクマネーの供給擴大に向けて」, 2004.6.25; 小委員會 會議案件 「金融システム化に關する檢討小委員會報告書-電子債權について」, 2004.6.16.

〈http://www.meti.go.jp/policy/economic_industrial/press/0005366/0/040625shingikai2.pdf〉

42)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자채권법에 관한 논의는 일본에서 오래 전에 시작되었으나, 그 시행은 韓國이 훨씬 앞서 있다. 전자어음제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새로운 결제제도의 도입에 따른 코스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池田眞郎 外, *ジュリスト 座談會*, 2~3면, 14면.

43) 일본의 債權讓渡特例法은 「동산 및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양도특례법”이라 함)로 제명이 바뀌는 등 2005년 3월 31일에 대폭 개정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는 법인이 動産을 양도할 때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윤부찬, “동산양도등록제도의 도입 필요성-일본의 동산양도등기제도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

에 의하여 채권양도등기에 의한 제3자 대항요건의 취득을 제도화하였다.⁴⁴⁾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은 將來債權까지 등기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동산양도의 공시제도와 함께 동산 및 당해 동산의 매각대금까지 일괄하여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아울러 「전자채권법안」에서는 현재 은행, 대기업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일괄결제방식, 전자어음 서비스에 대하여 민법의 원칙 및 약관에 입각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의 이용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⁴⁵⁾

2. 動産·債權讓渡特例法和 전자등기

일본의 동산·채권양도특례법에 의하면 法人이 채권(指名債權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양도한 경우 당해 채권에 관하여 法務局(우리 나라의 登記所에 해당)의 채권양도등기 파일에 양도의 登記가 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일본 민법 제467조(우리 민법 제450조에 해당)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등기의 일자를 확정일자로 보게 된다(동법 제2조 1항). 그러나 채권의 양수인 및 채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등기의 대상이 되는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의 移轉的 양도계약뿐만 아니라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設定的 양도의 합의도 포함한다.⁴⁶⁾ 따라서 채권의 교환·할인 등의 債權의 계약은 물론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과 같은 物權의 합의도 이에 해당한다. 해석론상으로는 양도의 방식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경우에도 登記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채권양도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양도 및 그 양도에 관하여 등기가 된 것에 대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권의 채무자에게 등기관이 발급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교부하여 통지하거나 당해 채무자가 승낙한 때에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채권양도의 등기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기 디스크로써 작성하는 채권양도등기 파일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일본에서의 채권양도등기는 초기에는 東京 법무국 민사행정부 채권등기과에서만 취급

12권 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9, 426~440면 참조. 일본법 규정은 로앤비(<http://www.lawnb.com>)의 일본법령 서비스로 확인.

44) 박현일,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46집, 집문당, 2004, 168면, 257~263면; 이성훈, “일본의 채권양도 등기제도에 관한 소고(1~3)”, 「경영법무」, Nos. 92~94.

45) 産業構造審議會 産業金融部會 中間報告書, 2-64~65면.

46) 일본 慶應義塾大의 이케다(池田) 교수에 의하면 채권양도특례법상 전자는 ‘本來型’으로 자산유동화와 같은 자금조달을 위한 포괄적인 채권양도에 해당하고, 후자는 ‘擔保型’으로 양도인의 支拂停止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池田眞郎, 「債權讓渡法理の展開」(債權讓渡の研究 第二卷), 弘文堂, 2001, 151~154면.

하였는데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편리성과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안전성 때문에 이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고무되어 일본 정부는 'e-Japan' 전략의 일환으로 채권양도등기에 대한 온라인 신청제도를 도입하였다. 法人登記에 대하여는 「전기통신회선에 의한 등기정보의 제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동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법인이 채권양도등기상 채권의 양도인인지 여부, 채권양도등기일, 양수인, 등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송수신되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000년 「상업등기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상업등기에 기한 電子認證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전자인증등기소로 지정된 도쿄 법무국의 등기관이 각 회사법인의 관할등기소를 경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 電子認證登記官으로서 회사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등기를 신청하려면 양도인 및 양수인이 신청서 및 신청 자기 디스크를 작성하여 이에 소정의 첨부서면을 첨부하여 채권양도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 또는 신청정보 및 권한증명정보를 일본 법무부 제공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인터넷 PC를 통하여 채권양도등기소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⁴⁷⁾

V. 맺음말

채권을 양도하거나 할인받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電子方式을 활용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규율하는 법제가 특별법 위주로 되어 있어 통일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데다 전자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e-Japan' 전략과 결부시켜 매출채권 등의 담보활용을 위한 전자공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실시를 앞두고 주저하는 모습과는 對照的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 나라는 기업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그 이용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예컨대,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도 다른 담보가 붙어 있지 않은 순수한 債權만을 기초로 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폴링의 결과이긴 하지만 수천억 대에 이르는 것들이다.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구매기업이 대기업이고 판매기업이 그 협력

47) 일본에서는 양도대상 채권 수가 5천개를 넘거나 신청에 관련된 데이터의 크기가 1,500 킬로바이트를 넘는 등 기술적인 이유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래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전자어음의 경우에도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는 있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産業金融機能을 강화하고 金融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기업동산 및 매출채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산양도 및 채권양도의 公示制度를 새로 창설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동산과 채권을 활용하는 새로운 담보제도에 대하여 학계와 정부, 금융계가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기반이 구축된 만큼 구체적으로 실시계획(Action Program)을 수립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⁴⁸⁾

일차적으로는 ABS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산유동화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문호를 좀더 개방하는 동시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및 구조화(structuring)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⁴⁹⁾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있어서도 일반 중소·중견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급은행(전자채권발행은행)의 매출채권 심사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채권양도가 전자방식으로 공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산유동화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그리고 電子債權은 금융결제원이 전적으로 거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밖에 부동산 거래나 상법에 기한 기업공시는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등 3元化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권리보호가 너무 복잡해진 것도 사실이다. 본래 公示制度란 권리의 변동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기관이 專門性을 살려 公示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산 시스템 구축에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터에 이미 투자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요긴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등기·등록기관이 다변화되어 있는 것은 국민 개인의 정보를 어느 한 정부기관이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다.⁵⁰⁾

그보다는 이용자들이 큰 불편 없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렴한 수수료만 내고 인터넷을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다. 예컨대,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에서 어느 기업이 특정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확인하였다면, 곧바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기업이 유동화

48) 同旨: 윤부찬, 전제논문, 455면; 동산담보의 특정성을 확보하고 담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인 RFID('전자식별'이라고도 하는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기업동산 및 채고자산을 담보로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제안은 박원일,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금융법연구』 제1권 2호, 한국금융법학회, 2004 참조.

49) 예컨대 자산유동화법 제2조 2호의 자산보유자로 인정되는 일반기업의 범위 확대, 제17조 1항 유동화전문회사의 자본금 규모 축소 등이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50) 일본에서도 제도시행 초기의 혼란 및 신용불안을 피하기 위해 채권양도와 관련된 개략적 등기사항을 법인등기부에 통합하여 기록하지 않고 따로 동산·채권양도의 등기사항개요 파일제도를 마련하였다.

한 매출채권과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담보목적물의 파악은 채권금융기관의 담보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國際的인 채권양도를 통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매출채권의 양도는 자산유동화, 팩토링, 포페이팅, 프로젝트 파이낸스⁵¹⁾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⁵²⁾ 그러나 국제채권양도협약이 장래 조건부 채권의 양도, 양도금지 특약의 배제 등에 있어 우리 민법이나 자산유동화법과 다르고, 우선권에 관한 규칙이 우리 國際私法과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일 다수의 무역상대국들이 UNCITRAL협약에 가입하고 國際登錄제도를 채택한다면 우리 나라도 協約에 가입하고 국제등록제도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 UNCITRAL협약을 국내 도입하여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자산유동화, 전자채권 등으로 채권양도가 전자공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협약에 가입할 경우 國內채권의 양도와 國際채권의 양도로 2원화하여 법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로서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어느 나라가 가입하는지 國際的인 動向을 살펴면서 협약에의 가입 여부, 기존 자산유동화법 등의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⁵³⁾ 다만, 우리 나라는 효율적으로 전자적인 공시방법을 실시하고 '技術의 標準化'를 달성하여 IT 세계표준화를 선도하는 일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최근 Unidroit(私法統一國際協會) 등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협약들이 대부분 전자등기·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분야의 시장이 크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⁵⁴⁾

※ 주요어: 매출채권, 담보권, 채권양도, 공시방법, 전자등록, 자산유동화, 전자채권, 전자어음.

51) 팩토링, 포페이팅은 전형적인 資產金融(asset-based finance)에 속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우에도 시설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입(future cash flow)을 포괄적으로 금융기관에 이전하기로 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2) 국내 기업이 동산담보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 수출할 때에는 수출보험보다 현지에서 수출화물을 대상으로 담보약정서(security agreement)와 담보명세서(financing statement)를 작성하여 구매대금담보권(purchase money security right)으로 등록(filing)하는 것이 대금결제를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한다. 서경석, "미국 UCC Article 9 상의 동산담보제도(5)", 『경영법무』 No.82, 한국경영법무연구소, 2001.1, 44~46면.

53) 同旨: 석광현, 전계서, 208~210면. 2005년 10월 말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UNCITRAL의 선임법무관 바지나스(Spiros V. Bazinas) 박사는 한국의 경우 이미 도입여전이 갖춰진 만큼 적용범리가 다를지라도 유익함이 많다면 국제채권양도협약을 도입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우리 나라가 전자방식의 채권양도 내지 담보제공을 서둘러 시행한 것은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은행이 거래기업의 국제채권양도를 인정하여야 할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54) 예컨대 2001년 말에 타결된 Unidroit의 국제이동장비담보협약 및 항공기 의정서는 담보권(security interest)의 국제등록 선후에 따라 그 우열을 정하도록 하였다. 박원일, 전계서, 139~147면.

◆ 참고문헌 ◆

-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 2005.
- 김형민,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이해”,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6호, 금융결제원, 2002.
- 박현일,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46집, 집문당, 2004.
- 박현일,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금융법연구』 제1권 2호, 한국금융법학회, 2004.
- 서경석, “미국 UCC Article 9상의 동산담보제도(5)”, 경영법무 No.82, 한국경영법무연구소, 2001.1.
- 석광현,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법무부, 2002.
- 윤부찬, “동산양도등록제도의 도입 필요성 - 일본의 동산양도등기제도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2권 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9.
- 자산유동화 실무연구회, 『금융혁명 ABS: 자산유동화의 구조와 실무』, 한국경제신문사, 1999.
- 정경영, “전자외상매출채권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2002 e-비즈니스 법제연구 I』, 한국전산원, 2002.12.
- 정찬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금융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04.
- 한국전자지불포럼·B2B지불분과위원회, 『전자외상매출채권 구성요소』, 2002.1.
- 池田眞郎 外, “『電子債權法』の立法化に向ける理論的課題”, 『ジュリスト』(No. 1276) 座談會, 2004.10.1.
- 池田眞郎, 『債權讓渡法理の展開』(債權讓渡の研究 第二卷), 弘文堂, 2001.
- 日本 經濟産業省 産業構造審議會 産業金融部會 中間報告書 『金融サービスの高度化とリスクマネーの供給擴大に向けて』, 2004.6.25.
- 金融システム化に関する検討小委員会, 『金融システム化に関する検討小委員会報告書-電子債權について』, 2004.6.16.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 <<http://dart.fss.or.kr/>>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http://www.kftc.or.kr/>>
-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 <<http://www.kdb.co.kr/>>
- 日本 經濟産業省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olicy/economic_industrial/press/0005366/0/040625shingikai2.pdf>
- UNCITRAL 홈페이지 <<http://www.uncitral.org/uncitral/index.html>> 이상 [2006.5.25 접속]

〈Abstract〉

Receivables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Whon-Il Park*

Since the so-called IMF financial crisis was over, small businesses in Korea have been able to cash in on the receivables arising out of transactions with large companies. It empower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raise additional fund though they have insufficient collateral. At present, there are three ways in capitalizing on account receivables: outright assignment for securitization, assignment by way of security, and discount in the form of bills.

First, it could be realized by way of securitization. The originator (“Supplier”) assigns the account receivables to the special purpose vehicle (SPV) by means of a true sale, as provided for in the Act on Asset-backed Securitization(the “ABS Act”). The receivables are usually pooled up to a considerable amount. Then the SPV may issue asset-backed securities. According to the ABS Act, the originator’s assignment of receivables is perfected by the notification to the respective debtors and the registration of securitization plan wit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Just after the FSS’s screening, the securitization plan together with the specifications of receivables assigned by the originator will be disclosed on the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DART) System, and the interested person may look into the disclosed data and documents on the Internet.

Second, the account receivables may be transformed into electronic claims (“e-claims”), which will be assigned as security to the bank for a loan up to the amount of receivables. Supplier may apply to its bank (“Supplier’s Bank”) for the payment by means of e-claims based upon the account receivables. After Buyer acknowledges the sale and delivery of goods, it agrees to issue the e-claims through its bank (“Buyer’s Bank”). Then Buyer’s Bank notifies the issuance of e-claims to the

* Assistant Professor of Law at Kyung Hee University.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KFTC) and demands the registration in the KFTC Registry. When Supplier's Bank is notified of such transaction, it relays the notification to Supplier. If Supplier applies for a loan up to the amount of receivables, it is required to assign the e-claims by way of security to Supplier's Bank. Its biggest merit is to get the appropriate cash financing from the bank rather than the discount of bills even before the due date.

Third, the account receivables may be transformed into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e-bills"). Buyer may issue the e-bill to pay Supplier via Buyer's Bank. Then Buyer's Bank notifies the issuance of e-bill to the e-bill administrator, which is currently conducted by KFTC, which relays the notification to Supplier's Bank. The presentation of e-bills and subsequent settlement will be automatically processed by and between Supplier's Bank and Buyer's Bank. This mechanism has been formalized in September 2005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Issuance and Negotiation of e-Bills." The registry maintained by KFTC keeps the particulars of each e-bill, not the truncated image of original promissory notes, and would prevent any forgery or alteration of the bills. The e-bill could be negotiated and endorsed up to 20 times during the life of twelve-month maximum.

On the international scene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has made efforts to effectuate the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The UN Receivables Convention seems to be helpful to cash in on the account receivables of the international nature. The Convention provides for five alternatives, including the registration system, in the Annex to govern the priority among the rights of an assignee and other competing claimants.

As mentioned before, Korean enterprises have utilized more efficient ways to convert account receivables into cash by means of electronic registration. To further these mechanisms in Korea, it is advisable to expand the scope of receivables financing, and to enhance its availability to the ordinary small businesses. For the time being, however, it is unlikel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use e-bills because they will show detailed financial transactions to the outsiders including tax collectors.

Another problem is that the electronic registries are scattered among FSS in the Administration, KFTC, a non-profit organization, and the Registration Office of the Judiciary Branch. To enhance the notification effect, however, it is more important for users to search the necessary data without consuming too much time, cost and efforts rather than a centrally-controlled registration system. Therefore, we had better to wait

and see some more major trading partners to join the Receivables Convention before Korea decides to accede to the Convention.

※ Key Words: account receivables, security interest, notification, electronic registration, asset-backed securitization(ABS), e-claims, e-bill.